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32
----------	-------

발의연월일 : 2026. 4. 20.

발 의 자 : 조계원 · 민병덕 · 안도걸  
소병훈 · 김문수 · 이광희  
이개호 · 임미애 · 최혁진  
김남희 · 서미화 · 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하여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미술관 중 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025년 기준으로 94곳에 달해 지역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공공적 책임을 갖는 박물관·미술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지역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 공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법률 제 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항은”을 “학예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u>사항은</u>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12조(설립과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학예</u> <u>사 등 인력·조직 및 시설 등</u> <u>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범위에서 해당</u>----- -----.</p>